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일, 복기왕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4. 9. 4.)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5. 11. 28.)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4. 9.)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6. 4. 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6. 4.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복기왕의원)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확보 및 보유한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개별 연구기관별로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시책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기관 간 연구데이터 확산·공유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러한 통합적 관리체제의 구축과 연계하여 연구기관별로 관리 및 활용체제를 강화한다면 통합적 관리체제의 하부 구성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연구데이터’나 ‘데이터관리계획’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는 ‘연구데이터’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정의하고, ‘데이터관리계획’을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음.¹⁾

1)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편, 우리위원회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건²⁾이 계류 중인데 동 제정안에서 “국가연구데이터” 및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함.

셋째, 개정안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개방 및 공동활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이미 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생산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292호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96호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